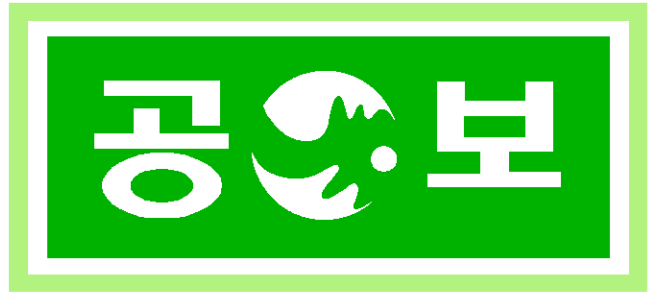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관	기 관 의 장



제 707 호 2011. 9. 2(금)

공 고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552호[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회 람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1 - 552 호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9. 02.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 제10467호, 2011. 3. 29.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82호, 2011. 6.27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의 적립·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하향조정(안 제3조)
 - 당초 30% 에서 ⇒ 15%로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제한된 자율성 부여(안 제5조)
 -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 사용가능한 기금보유액 범위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설방재과장, 219-7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자료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